

2025 李世三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안)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시행계획은 전형 전까지 변경될 수 있으며, 원서 접수 전본교 홈페이지에 발표되는 최종 모집요강을 반드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Contents



I.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
Ⅱ.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요약 4
Ⅲ. 2025학년도 전형 일정 ····· 5
IV.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 6
V. 수시 모집 ······ 8
VI. 정시 모집 ···································
Ⅷ.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20
Ⅷ.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 23
IX.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 24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주요 변경사항

1. 학칙개정에 따른 모집단위 및 입학정원 변경

구부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1 L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모집단위명	입학정원	-1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	165			
			<u>기계공학과</u>	<u>58</u>	
			<u>자동차공학과</u>	<u>50</u>	
지기 점류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등			<u>항공·기계설계학과</u>	<u>57</u>	
	기계자동차항공공학부(야)	20	기계공학과(야)	20	
	컴퓨터학부	103			
			<u>컴퓨터공학과</u>	<u>72</u>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u>31</u>	
	응용화학에너지공학부	164			
			<u>화공생물공학과</u>	57	
			반도체신소재공학과	50	구) 에너지소재공학전공
			나노화학소재공학과	57	
	산업경영·안전공학부	97			
			산업경영공학과	50	
			안전공학과	47	
	건축학부	74	<u></u>	<u> </u>	
		, ,		47	
학과 분리			건축학과(5년제)	27	
	디자인학부	36	<u>2454(2241)</u>	<u>21</u>	
	역시 한탁구 	30	산업디자인학과	18	
하고 보기			<u> </u>	18	
역의 군덕	그그버싱ㅁ하버	148	<u>기뉴닉계약전닉작한락파</u>	10	
	글로벌어문학부	140	어이어므라기	70	
			<u>영어영문학과</u>	<u>72</u>	
			<u>중국어과</u>	<u>49</u>	
	-11 -1 -1 L1	00	<u>한국어문학과</u>	<u>27</u>	
-	행정학부	69			
			<u>행정학과</u>	42	
			<u>행정정보융합학과</u>	<u>27</u>	구) 행정정보학전공
	경영·통상·복지학부	103			
			<u>경영학과</u>	<u>34</u>	
			<u>융합경영학과</u>	<u>21</u>	
			<u>국제무역학과</u>	<u>22</u>	구) 국제통상전공
			<u>사회복지학과</u>	<u>26</u>	
	스포츠학부	35			
			<u>스포츠의학과</u>	<u>18</u>	
			<u>스포츠산업학과</u>	<u>17</u>	
	철도공학부	124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u>31</u>	
			<u>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u>	<u>31</u>	
			<u>철도인프라공학과</u>	<u>31</u>	구) 철도인프라시스템공학전공
			<u>철도전기정보공학과</u>	31	구) 철도전기전자전공
	AI·데이터공학부	50	AI·데이터공학부	50	
=1.512	AI교통응용전공		인공지능전공		
명징 변경	데이터사이언스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건설환경융합공학과(야)	6	건설방재융합공학과(야)	6	



2. 모집인원 변경

모집 시기		 전형명			학년도	2025	증감(명)	
시기				인원(명)	비율(%)	인원(명)	비율(%)	071(0)
		학생부종합(나비인자	I)	331	15.7	<u>21</u>	<u>1.0</u>	
		학생부종합(나비인자	Π)	186	8.81	<u>552</u>	<u>26.2</u>	
		학생부교과(일반)		888	42.1	<u>937</u>	<u>44.4</u>	
		학생부교과(지역인자)	99	4.7	<u>88</u>	<u>4.2</u>	
		학생부교과(사회기여	및 배려자)	38	1.8	<u>39</u>	<u>1.9</u>	
	정원내	학생부교과(고른기회)	62	2.9	<u>61</u>	<u>2.9</u>	
		실기/실적(일반)		10	0.5	<u>20</u>	<u>1.0</u>	
		실기/실적(지역인재)		1	0.0	<u>3</u>	0.1	
		실기/실적(특기자)		3	0.1	<u>2</u>	0.1	
		실기/실적(평생학습지	₹I)	24	1.1	24	1.1	
수시		소	계	1,642	77.8	1,747	82.9	
		학생부교과(농어촌)		45	2.1	44	2.1	
		학생부교과(특성화고	동일계)	28	1.3	28	1.3	
		학생부교과(기회균등	-)	31	1.5	31	1.5	
		학생부교과(특성화고	(졸재직자)	4	0.2	<u>4</u>	0.2	
	정원외	학생부교과(특수교육	·대상자)	11	0.5	11	0.5	
		실기/실적(농어촌)		1	0.0	<u>2</u>	0.1	
		실기/실적(특수교육다	·	0	0.0	0	0.0	
		실기/실적(평생학습자	\$\II,III)	83	3.9	83	3.9	
		소	계	203	9.6	203	9.6	
		합계		1,845	87.4	1,950	92.5	
		الداء (مايا)	가군	176	8.3	114	<u>5.4</u>	
~1.1	정원내	수능(일반)	다군	88	4.2	<u>40</u>	1.9	
정시		실기/실적(일반)	가군	2	0.1	<u>5</u>	0.2	
		합계		266	12.6	159	7.5	
		정원내 모집인원		1,908	90.4	1,906	90.4	
		정원외 모집인원		203	9.6	203	9.6	
		총 모집인원		2,111	100.0	2,109	100	

^{※ 2025}학년도 모집인원에 2023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2명 포함

3. 학생부종합(나비인재 I -면접전형) 모집 학과 변경

전형		2024학	년 도		2025학년도								
첫 제 브 즈 첫	연번	모집단위명	나비인재 I	나비인재Ⅱ	연번	모집단위명	나비인재 I	나비인재Ⅱ					
학생부종합 (나비인재 I)	1	전 모집단위	331	186	1	항공서비스학과	<u>21</u>						
(낙미인재 1)					2	전 모집단위	<u>0</u>	<u>552</u>					

[※] 학생부종합전형 미선발 일부 학과 제외

4. 수능최저학력기준

없음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등급 조정
	<u>간호학과</u>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내	없음
	없음	없음	없음 모집단위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5. 스포츠산업학과 전형요소 반영비율 변경

	20	24학년5	1			2025학년도										
모집	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				모집	전형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시기	্ শুপ	교과	수능	실기	기 총점 시기		신경 	교과	수능	실기	총점					
	학생부교과(일반)	600점 (60%) - 400점 1,000점 (40%) (100%)			실기/실적(일반)	<u>300점</u> (30%)	_	<u>700점</u> (70%)	1,000점 (100%)							
수시	학생부교과(지역인재)	600점 (60%)	_	400점 (40%)	1,000점 (100%)	수시	실기/실적(지역인재)	<u>300점</u> (30%)	_	<u>700점</u> (70%)	1,000점 (100%)					
7/1	학생부교과(농어촌)	600점 (60%)	_	400점 (40%)	1,000점 (100%)	ナハ	실기/실적(농어촌)	<u>300점</u> (30%)	_	<u>700점</u> (70%)	1,000점 (100%)					
	학생부교과(특수교육)	600점 (60%)	_	400점 (40%)	1,000점 (100%)		실기/실적(특수교육)	<u>300점</u> (30%)	_	<u>700점</u> (70%)	1,000점 (100%)					
정시	수능위주(일반)	주(일반) - 600점 400점 1,000점 (60%) (40%) (100%)		1,000점 (100%)	정시	실기/실적(일반)	_	<u>300점</u> (30%)	<u>700점</u> (70%)	1,000점 (100%)						

6. 예체능계열 실기종목 및 과제, 배점 변경

	2024	학년도	2025학년도								
11	7.0		전형	종목	과제(음악) / 배점(스포츠)						
전형	종목	과제(음악) / 배점(스포츠)		피아노	자유곡 1곡						
	피아노	자유곡 1곡	음악학과	관현악·타악기	자유곡 1곡						
음악학과	관현악·타악기	빠른 템포의 자유곡 1곡		성악	 자유곡 1곡						
	성악	이태리어로 된 성악곡 1곡,		20m왕복달리기	<u> </u>						
	00 011111	독일어로 된 성악곡 1곡 《총 2곡》	스포츠의학과	제자리멀리뛰기	150점						
스포츠의학과	20m왕복달리기	150점		윗몸일으키기	100점						
스포츠산업학과	제자리멀리뛰기	150점 100경		20m왕복달리기	<u>250점</u>						
	핸드볼공던지기	100점	스포츠산업학과	제자리멀리뛰기							
				<u>윗몸일으키기</u>	<u>200점</u>						

7. 정원내 특별전형 지원자격 변경

 전형	지원	자격
신영	2024학년도	2025학년도
학생부교과 (사회기여 및 배려자)전형	 · 지자체장상 수상자 · 다문화가정 자녀 · 직업군인 자녀 ·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자녀 ·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자녀 · 소방공무원 자녀 · 경찰공무원자녀 · 민주화운동자녀 	 지자체장상 수상자 다문화가정 자녀 직업군인 자녀 다자녀(3자녀이상) 가정 자녀 장애인(장애 정도가 심한) 부모 자녀 소방공무원 자녀 경찰공무원자녀 민주화운동자녀 교정직공무원자녀

8.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교생활기록부 성적 가산점 변경

구분		2024학년도		2025학년도
	구분	내용	구분	내용
	학 년 별 반영비율	미적용	학 년 별 반영비율	미적용
일반전형	반 영 교 과 목	계열별 공통 및 일반선택 12과목 + 진로선택 3과목	반 영 교 과 목	계열별 공통 및 일반선택 12과목 + 진로선택 3과목
	가 산 점 부 여	주요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수단위합 100이상 가중치 7% 부과	가 산 점 부 여	주요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이수단위합 100이상 <u>가산점 10% 부여</u>
	가 중 치 부여방법	우리대학 백분위 환산 점수에 가중치 7%부여 후 최종 점수 환산	가 산 점 부여방법	우리대학 <u>교과성적 산출 점수에 가산점 10%부여</u> 후 최종 점수 환산



2025학년도 대학입학전형 요약

모집 시기	구분	전형 유형	전형명		모집 인원	전형방법
		학생부 종합	학생부종합(나비인재전형	(I)	21	[1단계] 서류종합 100% [2단계] 1단계성적 60% + 면접 40%
		종합	학생부종합(나비인재전형	∄Ⅱ)	552	서류종합 100%
			학생부교과(일반전형)		937	
		학생부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88	[전 모집단위] 학생부 100%
		교과	학생부교과(사회기여 및 비	내려자전형)	39	[스포츠의학과] 학생부 60% + 실기 40%
	정원내		학생부교과(고른기회전형)	61	
			실기/실적(일반전형)		20	[음악학과] 학생부 20% + 실기 80%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30% + 실기 70%
		실기/실적(지)			3	[음악학과] 학생부 20% + 실기 80%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30% + 실기 70%
		실적	실기/실적(특기자전형)		2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20% + 실기 30% + 경기실적 50%
수시			실기/실적(평생학습자전형	형 I)	24	면접 100%
			학생부교과(농어촌전형)		44	
			학생부교과(특성화고동일	계전형)	28	
		학생부 교과	학생부교과(기회균등전형)	31	[전 모집단위] 학생부 100% [스포츠의학과] 학생부 60% + 실기 40%
			학생부교과(특성화고졸재	직자전형)	4	
	정원외		학생부교과(특수교육대성	'자전형)	11	
			실기/실적(농어촌전형)		2	[음악학과] 학생부 20% + 실기 80%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30% + 실기 70%
		실기/실적	실기/실적(특수교육대상자	나전형)	미지정	[음악학과] 학생부 20% + 실기 80% [스포츠산업학과] 학생부 30% + 실기 70%
			실기/실적(평생학습자전형	∄Ⅱ)	36	면접 100%
			실기/실적(평생학습자전형	∄III)	47	현급 100%
		수	시 모집인원		1,950	정원내 1,747명 / 정원외 203명
		수능	수능(일반전형)	가군	114	[전 모집단위] 수능 100% [스포츠의학과] 수능 60% + 실기 40%
정시	정원내	10	10(2220)	다군	40	수능 100%
		실기/실적	실기/실적(일반전형)	가군	5	[음악학과] 수능 20% + 실기 80% [스포츠산업학과] 수능 30% + 실기 70%
	정시 모집인원				159	정원내 159명
			군위탁		미지정	군위탁생규정, 제4조에 따라 임명된 군인으로 국방부장관의 취학 추천으로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자
		ļ	산업체위탁		미지정	「공무원 인재개발법」등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교육훈련을 위하여 선발된 공무원으로 교육부장관의 추천을 받은 자
		ই	등 모집인원		2,109	정원내 1,906명 / 정원외 203명



 \mathbf{III}

2025학년도 전형 일정

모집시기	구	분	일정						
	원서접수기간		2024. 09. 09.(월) ~ 09. 13.(금) <5일>						
	전형기간		2024. 09. 14.(토) ~ 12. 12.(목) <90일>						
	합격자 발표		2024. 12. 13.(금)까지						
수시	등록기간		2024. 12. 16.(월) ~ 12. 18.(수) <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4. 12. 26.(목)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기능함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4. 12. 27.(금) 22시까지						
	원서접수기간		2024. 12. 31.(화) ~ 2025. 01. 03.(금) <4일>						
	전형기간	가군	2025. 01. 07.(화) ~ 01. 14.(화)(8일)						
	선정기선	다군	2025. 01. 23.(목) ~ 02. 04.(화)(13일)						
정시	합격자 발표		2025. 02. 07.(금)까지						
	등록기간		2025. 02. 10.(월) ~ 02. 12.(수) <3일>						
	미등록 충원 합격	통보 마감	2025. 02. 19.(수) (합격자 발표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기능함						
	미등록 충원 등록	마감	2025. 02. 20.(목) 22시까지						
추가	접수·전형·합격통、	보 마감·등록	2025. 02. 21.(금) ~ 02. 28.(금) 18시까지 ※ 홈페이지 발표는 14시까지, 14~18시까지는 개별통보만 기능함						
추가	등록마감		2025. 02. 28.(금) 22시까지						

[※] 수능시행일: 2024. 11. 14.(목), 성적통지일: 2024. 12. 06.(금) 예정

[※]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은 수시 및 정시모집 기간과 동일하게 운영

^{※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제2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 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자의 경우, 9월 입학자를 선발할 수 있으며 전형 일정은 별도 공지

[※] 상기 일정 외 전형기간 세부 일정은 향후 모집요강에 별도 공지



모집단위 및 전형별 모집인원

													4	 수시											정.	시			
					정원내 정원외											7	성원니												
1			총		생부 합		학생	부교교	4		실기	/실조	4		학	생부고	고과			실기/	'실적			수	<u>_</u>	실기/ 실적			
단과대학	계 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나 비 인 재 I	나 비 인 재 Ⅱ	일반	지역인재	사회기여및배려자	고 른 기 회	일반	지역인재	특기자	평생학습자I	농 어 촌	특성화고동일계	기회균등	특성화고졸재직자	특수교육대 상 자	농 어 촌	특수교 육대 상자	평생학습자Ⅱ	평생학습자Ⅲ	소계	가군	다군	가군	소계
		기계공학과	61		10	39	3	1	2					1	1	1							58	3			3		
		자동차공학과	53		10	29	3	1	2					1	1	1							48	5			5		
		항공·기계설계학과	60		28	20	3	1	2					1	1	1							57	3			3		
융합		기계공학과[야]	22			19											2						21		1		1		
융합 기술 대학 (충주)	자연	전자공학과	158		30	94	9	3	6					3	2	3							150	8			8		
(충주)		전기공학과	42		9	24	2	1	1					1	1	1							40	2			2		
		전기공학과[야]	18			15											2						17		1		1		
		컴퓨터공학과	76		17	43	4	1	3					2	1	1							72	4			4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4		7	18	2	1	1					1	1	1							32	2			2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122		27	69	6	3	3					3	2	3							116		6		6		
		사회기반공학전공																					0				0		
		환경공학전공																					0				0		
		도시·교통공학전공																					0				0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이	18			17																	17		1		1		
	자연	화공생물공학과	60		15	31	3	1	2					1	1	1							55		5		5		
공과 대학 (충주)	^72	반도체신소재공학과	52		7	35	3	1	2					1									49		3		3		
(충주)		나노화학소재공학과	60		14	30	3	1	3					1	1	1							54		6		6		
		산업경영공학과	53		14	28	2	1	2					1	1	1							50		3		3		
		안전공학과	50		14	26	2	1	2					1	1	1							48		2		2		
		건축공학과	50		16	23	3	1	2					1	1	1							48		2		2		
		건축학과(5년제)	29		13	9	1	1	1					1		1							27		2		2		
	A) 17	산업디자인학과	19		6	9	1		1					1									18		1		1		
	인문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8		7	8	1		1														17		1		1		
		영어영문학과	76		17	42	4	2	3					2		2							72	4			4		
		중국어과	51		12	28	3	1	2					1		1							48	3			3		
		한국어문학과	29		6	13	1	1	2					1		1							25	4			4		
		행정학과	44		5	29	3	1	1					1	1								41	3			3		
	인문	행정정보융합학과	29		5	18	1	1	1					1	1								28	1			1		
		경영학과	36		9	19	2	1	1					1	1								34	2			2		
인문		융합경영학과	23		6	12	1	1						1	1								22	1			1		
인문 사회 대학 (충주)		국제무역학과	24		6	13	1	1						1	1								23	1			1		
(孝		사회복지학과	27		7	15	2		1					1									26	1			1		
		음악학과	17		3					10	1								1				15			2	2		
	虢	스포츠의학과	19			13	2							1									16	3			3		
		스포츠산업학과	18							10	2	2							1				15			3	3		
	인문	항공서비스학과	21	21																			21				0		
	자연	항공운항학과	27		24																		24	3			3		
	_	유아교육학과	27		12	9	1	1	1														24	3			3		



													4	수시											정	시	
								정원	l내									정원의	4					7	정원니	H	
		į		학	생부		학생	부교과	}		실기	/실조]		학⁄	생부고	과		실기/실적				수	<u>_</u>	실기		
단 과			총	- 8	합		, ,	사						E									실적				
	계열	모집단위	모집 인원	나 비 인 재 I	나 비 인 재 Ⅱ	일반	지 역 인 재	「회기여및배려자	고른기회	일반	지 역 인 재	특 기 자	평생학습자I	농 어 촌	특성화고동일계	기회균등	·성화고졸재직자	특수교 육대상자	농 어 촌	특수교 육대상자	평생학습자Ⅱ	평생학습자Ⅲ	소계	가군	다군	가 군	소계
		간호학과	60		24	18	8	1	2					1		1							55	5			5
		식품생명학부	56			39	4	1	3					3	2								52		4		4
		전 식품공학전공	9		9																		9				0
보건 생명 대학 (증평)	자연	전 식품영양학전공	7		7																		7				0
대학 (조명)		전 생명공학전공	7		7																		7				0
(0°0)		물리치료학과	38		8	19	2	1	1					1		1							33	5			5
		응급구조학과	36		10	18	2	1	1					1		1							34	2			2
	인문	유이특수교육학과	13		12																		12	1			1
	인문	철도경영·물류학과	40		15	12		1	1					1	1	1							32	8			8
		AI.데이터공학부	53		28	5		1	1					1	1	1							38	15			15
		인공지능전공																					0				0
철도		데이터사이언스전공																					0				0
년약 (의왕)	자연	데이터사이언스전공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34		17	7		1	1					1	1	1							29	5			5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34		17	7		1	1					1	1	1							29	5			5
		철도인프라공학과	34		16	8		1	1					1	1	1							29	5			5
		철도전기정보공학과	34		15	7		1	1					1	1	1							27	7			7
	2)01	안전융합공학과[야]	25										10								10	5	25				0
미래	자연	건설방재융합공학과[야]	20										6								10	4	20				0
미래 융합 대학 (충주)	V) II	스포츠복지학과[야]	21										2								2	17	21				0
(충주)	인문	복자경영학과[야](증평)	21										2								2	17	21				0
	자연	스마트철도교통공학과[야]	20										4								12	4	20				0
자유 전공 학부	자연	자유전공학부(충주/증평)	13		11																		11		2		2
		계	2,109	21	552	937	88	39	61	20	3	2	24	44	28	31	4	11	2	0	36	47	1,939	114	40	5	159

- * 총모집인원은 특수교육대상자 11명이 포함된 인원
- ※ 2023학년도 미충원 이월인원 2명이 포함된 인원
- ※ 첨단학과 신설은 교육부 승인이 있을 시 추후 심의 예정
- ※ 학과명은 변경 된 명칭 기준으로 작성
- ※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모집단위를 지정하지 않고 성적순으로 총 11명 선발
- 다만, 항공서비스학과, 항공운항학과,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자유전공학부, 야간학과는 모집하지 않음
- ※ 미래융합대학 소속 학과는 수시 미충원 이월 인원 발생 시, 정시 다군(평생학습자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
- ※ 젠 표시 전공 : 학생부종합(나비인재 I, II 전형) 전공예약제 실시
- ※ 전공예약제 모집 전공 수시 미층원 이월 인원 발생 시, 해당 전공이 속한 학부의 정시모집 일반전형으로 이월하여 모집
- ※ 모집단위와 모집인원은 정원조정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사항은 우리대학 입학홈페이지에 공고



Ⅴ 수시 모집

학생부종합 위주 (나비인재전형 | . □)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전형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나비인재전형 I	21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동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나비인재전형Ⅱ	552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오는 법당에 의하여 등등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2. 제출서류 : 학교생활기록부

※ 학교생활기록부 대체 서식(증빙자료 포함) - 검정고시 또는 외국고교 출신자

3.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전형구분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신영기군	工省包刊	사건 인계	선일한편	서류종합	면접	총점		
나비인재전형 I	항공서비스학과	1단계	700%	600점(100%)	_	600점(100%)		
다미인세선영 1	앙증시미스틱파	2단계	100%	600점(60%)	400점(40%)	1,000점(100%)		
나비인재전형Ⅱ	전 모집단위	일괄사정	100%	1,000점(100%)	_	1,000점(100%)		

4. 학교생활기록부 교과성적 반영 : 정성적 평가에 포함

5.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6. 서류평가 및 면접

가. 나비인재전형 I

1) 서류평가

가) 평가항목: 전공적합성, 사회성, 자기주도성

나)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은 6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도전정신), 사회성, 자기주도성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다) 반영점수 : 600점(최고점) ~ 0점(최저점)

2) 면접평가

가) 평가항목: 전공적합성, 사회성

나)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은 4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며, 수험생 개인별로 제출서류

내용 확인 및 사회성 중심의 역량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다) 반영점수 : 400점(최고점) ~ 0점(최저점)



나. 나비인재전형Ⅱ

1) 서류평가

가) 평가항목: 전공적합성, 사회성, 자기주도성

나)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은 1,0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며, 제출된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전공적합성(도전정신), 사회성, 자기주도성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다) 반영점수 : 1,000점(최고점) ~ 0점(최저점)



학생부교과 위주

일반/지역인재/사회기여 및 배려자/고른기회/농어촌/특성화고동일계/ 기회균등/특성화고졸재직자/특수교육대상자전형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시역인재선영 88명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전형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지역인재선영 88명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이는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자체장상 수상자 : 고교 제학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선행, 효행, 봉사, 모범, 콩로 등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는 자 ②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친모(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번 배려자 전형 ④ 대자녀가정 자녀 : 3차녀 이상 가정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 중확한 문자녀 ⑥ 교정직공무원자녀 ⑧ 민주화운동자녀 ⑨ 교정직공무원자녀 ③ 교정직공무원자녀 ② 도착인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자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명」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명」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명」제3조제2호에 따른 자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⑤ 만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시법」제3조에 따른 음 면 지역 또는 「도사 박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등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시법」제3조에 따른 음 면 지역 또는 「도사 박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사 박지 지역에 구각한 자 동이촌 또는 도사 박지 지역에 구각한 자	일반전형	937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자체장상 수상자: 고교 제확기간 중 지방자치단체장(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에 한함)으로부터 선행, 효행, 봉사, 모범, 공로 등에 대한 수상 실적이 있는 자 ② 다문화가정 자녀: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천모(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친부(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만국 국적자 전형 ③ 직업군인 자녀: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자녀 ④ 다자녀가정 자녀: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무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중전 1~3등급)인 자 ⑥ 소방공무원자녀 ⑤ 민주화운동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자녀 ⑤ 교정직공무원자녀 ⑤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조에 따른 자상되지층 가구의 학생 ①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조에 따른 자상되장가 중 국가보훈판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정 대상자(국가보훈계 대법령에 따른 조사되존대상자 중 국가보훈판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정 대상자(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회에 따른 도사보주사건(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번 지역 또는 「도사・법지 교육진종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사 법지 지역에 소개하는 조·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고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제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이촌 또는 도사 법지 지역에 거주한 자	지역인재전형	88명	고등학교 졸업자(예정)자로서 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소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한함)으로부터 선행, 효행, 봉사, 모범, 공로 등에 대한 수상실적이 있는 자 ② 다문화가정 자녀 : 결혼 이전에 외국국적이었던 천모(천부)와 국적이 대한민국인 천부(천모)사이에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자 및 배려자 전형 ③ 직업군인 자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 장과 이상 가정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 무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 ⑥ 소방공무원 자녀 ⑦ 경찰공무원자녀 ③ 민주화운동자녀 ④ 교정식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조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조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조생활 보장법」제3조제1호에 따른 자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차 대학업학투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발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 면 지역 또는 「도사・벽지 교육관광법 이수하고 중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가고등학교 졸업인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 고등학교 생각이기(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하 대한 모두 모두 남적 지역에 소재하는 출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 고등학교 생각이 대론 도사 벽지 지역에 가주한 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사회기여 및 배려자 경명 39명 ③ 직업군인 자녀 : 장교, 준사관, 부사관 자녀 ④ 다자녀가정 자녀 : 강자녀 이상 가정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 ⑥ 소방공무원 자녀 ⑦ 경찰공무원자녀 ⑧ 민주화운동자녀 ⑨ 교정식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자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⑤ 만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 (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취법」제3조에 따른 음·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작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 존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 조업일까지) 중 본인과 무모 도등학교 생명 사업 때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제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무모 도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하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지방자취실 제작기관(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전략되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전략을 보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전략되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업일까지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업일까지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업일까지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입일학자 기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업일까지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업일까지 중 본인이 작업을 보고등학교 중업일반대 기 등학교 중심일 기 등학교 중심일 기 등학교 중심 기 등 점심 기 등 점심 기 등 본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등 기			한함)으로부터 선행, 효행, 봉사, 모범, 공로 등에 대한 수상
전형 ④ 다자녀가정 자녀 : 3자녀 이상 가정 자녀 ⑤ 장애인부모 자녀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 ⑥ 소방공무원 자녀 ⑦ 경찰공무원자녀 ⑧ 민주화운동자녀 ⑨ 교정직공무원자녀 ⑨ 교정직공무원자녀 ③ 교정직공무원자녀 ③ 교정직공무원자녀 ③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대부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업학투별건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상 기업에 가주한 자	사회기여		
(5) 장애인부모 자녀 : 부모 중 1명 이상이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5) 소방공무원자녀(7) 경찰공무원자녀(8) 민주화운동자녀(9) 교정직공무원자녀(1)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2)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5조의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4)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5) 만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1)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관형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제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상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조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에 대를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조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에 대를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조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에 대를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조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에 대를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조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중·고등학교에 대를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조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조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39명	
등록을 필한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종전 1~3등급)인 자 ⑥ 소방공무원 자녀 ⑦ 경찰공무원자녀 ⑧ 민주화운동자녀 ⑨ 교정직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병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병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생각이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병지 지역에 가주한 자	전형		
(⑥ 소방공무원 자녀 (⑦ 경찰공무원자녀 (⑧ 민주화운동자녀 (⑨ 교정직공무원자녀 (⑨ 교정직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관광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제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관광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충·고등학교 제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의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제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① 경찰공무원자녀 ③ 민주화운동자녀 ③ 교정직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가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용 민주화운동자녀 ③ 교정직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③ 교정직공무원자녀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3조제2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충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보다 조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고른기회 전형 61명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상어촌 전형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지는기의 전형 3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4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5)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1)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강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전형 ③ 「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④ 「국가보훈 기본법」제3조제2호에 따른 국가보훈대상자 중 국가보훈관계 법령에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가주한 자 경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고른기회		②「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따른 교육지원 대상자(국가보훈처 대학입학특별전형대상자증명서 발급대상자) ⑤ 만학자: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61명	③「한부모가족지원법」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5) 만학자 : 고등학교 졸업 후 10년 이상 경과자(2015년 2월말 이전 졸업자) 또는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2025.3.1.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 2. 28. 이전 출생자)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①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2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용어촌 전형 2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상어촌 전형 44명 전형 44명 조건형 44명 전형 44명 전형 조건형 기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농어촌 전형 2 「지방자치법」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전형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농어촌		
		44명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전형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특성화고 동일계 전형	28명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 졸업(예정)자로서 우리 대학이 지정한 모집단위별 동일 계열 기준학과를 이수한 자 ※ 동일계열 기준학과가 모집요강에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특성화고등학교에서 해당 모집 단위와 관련된 전문교과를 30단위 이상 이수한 경우 지원 가능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및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특성화고등학교 졸업(예정)자는 지원할 수 없음
기회균등 전형	31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의 학생 ②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가구의 학생 ③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가구의 학생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	4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①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② 특성화고등학교등*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실습 등 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를 포함)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4년 3월 1일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특수교육 대상자 전형	11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2.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n zlrlol	기기기기기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단계	신탈인된	학생부교과	실기	총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0점(100%)	_	1,000점(100%)				
스포츠의학과	일괄합산	100%	600점(60%)	400점(40%)	1,000점(100%)				

3.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과제				
	20m왕복달리기(150점)	20m 지점의 고깔과 스타트 지점의 고깔 2바퀴 왕복				
스포츠의학과	제자리멀리뛰기(150점)	제자리에서 도약하여 착지한 지점의 기록				
	윗몸일으키기(100점)	1분간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한 횟수를 기록 (1회 측정)				



4. 수능최저학력기준

전형명	모집단위	수능최저학력기준 국어, 영어, 수학, 사탐/과탐	등급 조정
일반전형	전 모집단위 (일부학과 제외)	없음	없은
200	간호학과	상위 2개 영역 등급 합이 8이내	없음
일반전형외 모든 전형	전 모집단위	없음	없음

- ※ 탐구영역은 사탐/과탐을 제한하지 않으며 상위 1개 과목의 등급 반영
- ※ 탐구영역 중 **직업탐구는 반영하지 않음**

5. 선발 방법

가. 합격자 결정

- 1) 수능최저학력기준 충족자 중에서 우리 대학 전형요소 성적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 2)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모집단위 미지정으로 총 11명을 모집하며,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전체를 성적순으로 합격자 11명 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를 초과하는 자 제외)
- 나. 예비대상자 결정 :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



실기/실적 위주 (일반/지역인재/농어촌/특수교육대상자전형)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전형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일반전형	20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
지역인재전형	3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본인이 입학일부터 졸업일까지 충청권(대전, 세종 포함) 소 재 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농어촌전형	2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중·고등학교 재학기간(중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과 부모 모두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② 「지방자치법」 제3조에 따른 읍·면 지역 또는 「도서·벽지 교육진흥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도서·벽지 지역에 소재하는 초중·고등학교에서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초·중·고등학교 재학기간(초등학교 입학일부터 고등학교 졸업일까지) 중 본인이 농어촌 또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한 자 ※ 재학 중 또는 졸업 이후 읍·면이 행정구역 개편으로 동으로 된 경우 동을 읍·면으로 인정 ※ 농어촌 및 도서·벽지 소재 특수목적고(과학고, 외국어고, 국제고, 예술고, 체육고, 마이스터고) 출신자는 지원할 수 없음
특수교육 대상자전형	미지정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한 장애인 등록을 필한 자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등에 의한 상이 등급자(국가보훈처 등록)

2.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	<u> 산별</u> 반영점수 및 실질변	반영비율
工省包刊	^[~8단계	신원한편	학생부교과	실기	총점
음악학과	일괄합산	100%	200점(20%)	800점(80%)	1,000점(100%)
스포츠산업학과	일괄합산	100%	300점(30%)	700점(70%)	1,000점(100%)

3.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과제
	피아노	자유곡 1곡
음악학과	관현악·타악기	자유곡 1곡
	성악	자유곡 1곡
	20m왕복달리기(250점)	20m 지점의 고깔과 스타트 지점의 고깔 2바퀴 왕복
스포츠산업학과	제자리멀리뛰기(250점)	제자리에서 도약하여 착지한 지점의 기록
	윗몸일으키기(200점)	1분간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한 횟수를 기록 (1회 측정)

4.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5. 선발 방법

- 가. 합격자 결정
 - 1) 우리 대학 전형요소 성적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 2) 특수교육대상자전형은 모집단위 미지정으로 총 11명을 모집하며, 모집단위별로 합격자를 발표하는 것이 아니라 지원자 전체를 성적순으로 합격자 11명 선발 (합격자 중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를 초과하는 자 제외)
- 나. 예비대상자 결정 :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



실기/실적 위주 (특기자전형)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전형구분	종목	모집인원	지원자격
특기자 전형	테니스	2명 (남)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최근 3년 이내 대한테니스협회와 ITF가 주관하는 국제대회, 전국대회 8강 이내 수상실적이 있는 자 (다만, 개인전은 50명 이상의 대회만 인정, 단체전은 본인이 3경기 이상 출전한 경우만 인정) ※ 최근 3년 이내 기준일: 원서접수 마감일 기준

2.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전형요스	<u> 산별</u> 반영점수 및	및 실질반영비율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학생부		실기	경기실적	ネカ
			교과	출결	[근/]	70/1/2/7	총점
스포츠산업학과	일괄합산	100%	160점 (16%)	40점 (4%)	300점 (30%)	500점 (50%)	1,000점 (100%)

※ 학교폭력 조치사항이 있을 경우, 총점에서 감점하여 반영

3.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과제
스포츠산업학과	테니스	포핸드, 백핸드, 스트로크, 발리, 서비스, 게임운영 등

4.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5. 선발 방법

가. 합격자 결정 : 우리 대학 전형요소 성적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나. 예비대상자 결정 :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



실기/실적 위주

(평생학습자전형 │ , □ , Ⅲ)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전형구분	모집인원	지원자격
평생학습자 전형 I (정원내)	24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2.3.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②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 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 실습 등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 졸업자 • 「평생교육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 2025년 3월 1일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평생학습자 전형Ⅱ (정원외)	36명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산업체 근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재직자 (「고등교육법 시행령」제29조제2항제14호 다목)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재학하는 동안 시・도 교육감이 「직업교육훈련 촉진법」에 따른 직업교육훈련기관 중 직업교육 훈련위탁기관으로 선정한 기관에서 1년 이상의 직업교육훈련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일반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0조제1항제10호에 따른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졸업자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91조제1항에 따른 특성화고등학교 중 자연현장 실습 등체험위주의 교육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고등학교를 제외한 학교(「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일반고등학교에 설치된 학과 중 특성화고등학교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으로 운영되는 학과 포함)졸업자 • 「평생교육법」제31조제2항에 따른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 중 특성화고등학교등에서 제공하는 것과 같은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평생교육시설에서 해당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재직기간 산정기준일: 2025년 3월 1일 ※ 군 의무복무 경력은 재직기간에 포함
평생학습자 전형Ⅲ (정원외)	47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 된 자로서 2025.3.1. 기준 만 30세 이상인 자(1995년 2월 28일 이전 출생자)



2.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사정단계 선발인원 -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F8단계	신탈인원	면접	총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0점(100%)	1,000점(100%)	

3. 수능최저학력기준 : 없음

4. 면접평가

가. 평가항목 : 전공적합성, 인성

나. 평가방법 : 각 평가위원은 1,000점 만점으로 절대평가하며, 수험생 개인별로 제출서류

내용 확인 및 전공적합성과 인성 중심의 역량 등을 평가기준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

다. 반영점수 : 1,000점(최고점) ~ 0점(최저점)



Ⅵ 정시 모집

수능 위주(일반전형) / 개군, 대군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가군	114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다군	40명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工省包刊	^F8단세	신달한편	수능	실기	총점	
전 모집단위	일괄합산	100%	1,000점 (100%)	_	1,000점 (100%)	
스포츠의학과	일괄합산	100%	600점 (60%)	400점 (40%)	1,000점 (100%)	

3.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배점	과제		
스포츠의학과	20m왕복달리기	150점	20m 지점의 고깔과 스타트 지점의 고깔 2바퀴 왕복		
	제자리멀리뛰기	150점	제자리에서 도약하여 착지한 지점의 기록		
	윗몸일으키기	100점	1분간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한 횟수를 기록 (1회 측정)		

4. 선발 방법

가. 합격자 결정 : 우리 대학 전형요소 성적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나. 예비대상자 결정 :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



실기/실적 위주(일반전형) / 가군

1. 모집인원 및 지원자격

모집시기	모집인원	지원자격
가군	5명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하여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2025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응시자

2. 사정단계별 선발인원 및 전형요소별 배점

모집단위	사정단계	선발인원	전형요소별 반영점수 및 실질반영비율			
그십인지	사건 6 단계	신원인된	수능	실기	총점	
음악학과	일괄합산	100%	200점(20%)	800점(80%)	1,000점(100%)	
스포츠산업학과	일괄합산	100%	300점(30%)	700점(70%)	1,000점(100%)	

3. 실기고사

모집단위	종목	과제		
	피아노	자유곡 1곡		
음악학과	관현악:타악기	자유곡 1곡		
	성악	자유곡 1곡		
	20m왕복달리기(250점)	20m 지점의 고깔과 스타트 지점의 고깔 2바퀴 왕복		
스포츠산업학과	제자리멀리뛰기(250점)	제자리에서 도약하여 착지한 지점의 기록		
	윗몸일스키기(200점)	1분간 윗몸일으키기를 실시한 횟수를 기록 (1회 측정)		

4. 선발 방법

가. 합격자 결정 : 우리 대학 전형요소 성적 총점의 고득점 순으로 모집단위별 모집인원의 100%를 합격자로 선발

나. 예비대상자 결정 : 불합격 처리되지 않은 자 전원을 후보자로 선발



VII

학교생활기록부 반영 방법

1. 학생부 반영비율 및 점수

전형구분	학년별 반영비율			저혀요소	· · · · · · · · · · · · · · · · · · ·	
	1학년	2학년	3학년		총점	
학생부교과전형	미적용			교과	1,000	

※ 수시의 경우 졸업예정자는 3학년 1학기까지 성적 반영

2. 반영교과 및 반영과목

ㅁ지게여	공통과목, 일반/	선택과목	진로선택과목(3개)	비고
모집계열	반영 교과	반영 과목(12개)	선도선택사측(3개)	H 1/
인문, 예체능	국어, 영어, 수학, 사회	반영 교과별 상위	4개 반영 교과중	
 자연	국어, 영어, 수학, 과학	3개 과목	상위 교과 3개	

- ※ 교과목은 학기별로 반영하며, 교과목별 3개가 되지 않거나 진로선택 교과목이 3개 미만인 경우 그대로 반영 단, 반영과목이 하나도 없는 경우는 사정에서 제외
- ※ 등급이 같은 경우 이수단위가 높은 과목 반영

3. 교과성적 산출 방법

학생부 반영점수 =
$$\left(\frac{\Sigma(등급점수 \times 0 수단위)}{\Sigma(반영과목 총이수단위)} + A\right) \times B$$

- ※ A: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지원자 중 주요교과목(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의 이수단위 합이 100이상인 지원자에 한해 백분위 성적산출 점수의 가산점 10% 부여
- ※ B : 전모집단위 10 / 음악학과 2 / 스포츠학부 6 / 특기자 1.6
- * 백분위 점수 : Σ (등급점수 \times 이수단위) / Σ (반영과목 총이수단위)
- ※ 소수점은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석차등급 환산점수표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 진로선택과목 점수산출 = 100-[(진로선택 과목 환산등급-1)×등급간점수(5)

- 진로선택 과목 성취도비율별 석차등급 산출식

성취도	실제등급
A	1 + A의 비율/100
В	성취도 A의 학생비율 해당 석차등급 + (A+B)의 비율/100
С	성취도 B까지의 누적 해당 석차등급 + (A+B+C)의 비율/100

*성취도 누적 학생비율에 따른 석차등급 기준

누적비율	0~	4.1~	11.1~	23.1~	40.1~	60.1~	77.1~	89.1~	96.1~
	4.0	11.0	23.0	40.0	60.0	77.0	89.0	96.0	100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반영예시) 주요교과목 이수단위가 100이상인 간호학과(자연계열) 지원자 성적산출

	일탁	진로선택교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과목명	이수	성취도	성	취도비	율
49	091	T 4	49	4770	단위	1011-	A	В	С
문학(4/5)	영어I(5/6)	확률과통계(3/4)	과학(2/5)	물리학II	3	A	20	40	40
독서(4/5)	영어II(5/6)	미적분I(5/5)	지구과학(2/3)	진로영어	5	В	20	40	40
국어(3/4)	영어회화(5/7)	수학II(5/6)	화학 I (3/4)	神船	5	С	30	30	40

* 일반교과의 ()는 이수단위/등급

			일빈	<u></u> - 교과				_	지근서태고	ন
국	국어 영어			수학		과학		- 진로선택교과		
아단위	점수	아래	점수	- 이수단위 점수		야단위	점수	아카대	반영등급	점수
4	80	5	75	3	85	2	80	3	1.2	99
4	80	5	75	5	80	2	90	5	3.6	87
3	85	5	70	5	75	3	85	5	6	75

가. 학생부교과(일반전형, 지역인재전형) 가산점 부여

▶ 대상전형 : 학생부교과(일반전형), 학생부교과(지역인재전형)

▶ 적용기준 : 국어, 영어, 수학, 사회, 과학 교과목 이수단위 합이 100이상인 지원자

▶ 반영방법 : 3. 교과성적 산출방법에 계산된 백분위 점수에 일반전형 10%, 지역인재전형 7%를 부여 (예시) 이수단위합이 100인 지원자의 성적이 산출식에 따라 백분위 점수가 97.5점인 경우

① 가산점

- 일반전형 : 97.5×0.1=9.75

- 지역인재전형 : 97.5×0.07=6.825

② 학생부 반영점수 산출

- 일반전형 : (97.5+9.75)×10=1072.50(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지역인재전형: (97.5+6.825)×10=1043.25(소숫점 셋째자리에서 반올림)

※ 단, 최종점수가 1,000점 이상인 경우 반영점수는 1,000점으로 반영하며, 동점발생 시 최종점수 우선 적용

나. 과목별 석차등급이 없는 경우 과목석차 활용

	과목별	백분율 산출	출식 = [{석	차 + (동석	차 인원수	- 1) / 2}	/ 재적수] >	< 100				
백분율	백분율 0 ~ 4.01 ~ 11.01 ~ 23.01 ~ 40.01 ~ 60.01 ~ 77.01 ~ 89.01 ~ 96.01 ~ 4.00 11.00 23.00 40.00 60.00 77.00 89.00 96.00 100											
석차등급 1 2 3 4 5 6 7 8 9												

다. 과목석차가 없고 과목평어만 있는 경우 평어 활용

평어	수	우	미	양	가
석차등급	1	3	5	7	9



라. 검정고시 출신자

	검정고시	100	100미만~	95미만~	90미만 ~	85미만 ~	80미만~	75미만 ~	70미만~	टा चोची.
	평균점수	100	95이상	90이상	85이상	80이상	75이상	70이상	61이상	61미만
	전 모집단위	970	940	910	880	850	820	790	760	730
반	음악학과	194	188	182	176	170	164	158	152	146
영 기	스포츠의학과	582	564	546	528	510	492	474	456	438
점 수	스포츠산업학과	291	282	273	264	255	246	237	228	219
'	특기자	155	150	146	141	136	131	126	122	117

마. 외국고교 출신자

	전 과 목 평균점수	95이상	95미만 ~ 90이상	90미만 ~ 85이상	85미만 ~ 80이상	80미만 ~ 75이상	75미만 ~ 70이상	70미만 ~ 61이상	61미만
	전 모집단위	970	940	910	880	850	820	790	760
반	음악학과	194	188	182	176	170	164	158	152
영 점	스포츠의학과	582	564	546	528	510	492	474	456
수	스포츠산업학과	291	282	273	264	255	246	237	228
	특기자	155	150	146	141	136	131	126	122

[※] 다만, 전 학년 백분위점수 산출이 불가능한 경우 성적사정에서 제외

4. 수시 특기자전형 학생부 출결 반영 방법

결석일수	0 ~ 2일	3일	4일	5일	6일	7일 이상
반영점수	40	38	36	34	32	30

- ※ 미인정 지각·조퇴·결과는 합산하여 3회를 1일 결석으로 계산
- ※ 질병, 기타에 의한 결석·지각·조퇴·결과는 결석일수에서 제외
- ※ 검정고시, 외국고교 출신자 등과 출결이 확인되지 않는 지원자는 지원자 평균점수 반영



VII

대학수학능력시험 반영 방법

1. 영역별 반영 비율

모집단위	활용지표	반영 비율(%)						
工省包刊	설명시표	국어	영어	수학	탐구(1과목)	계		
전 계열	백분위점수		상위 3개영역 평균					

- ※ 탐구영역은 직업탐구를 제외하고 상위 1개 과목 성적
- ※ 수능 반영영역 중 미응시영역 성적은 0점 처리 후 상위 3개 영역 적용

2. 영어 반영 방법 : 각 등급을 백분위 점수로 환산하여 활용

영어등급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6등급	7등급	8등급	9등급
백분위점수	100	95	90	85	80	75	70	65	60

3. 반영점수 산출 방법

모집단위	산출식
전 모집단위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점수의 합) / 3] × 10
음악학과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점수의 합) / 3] × 2
스포츠의학과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점수의 합) / 3] × 6
스포츠산업학과	[(상위 3개 영역 백분위 점수의 합) / 3] × 3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1.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					
단과 대학	모집단위	전공	재외국민	전 교육과정 이수자 / 북한이탈주민 /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기계공학과		5 이내					
	자동차공학과		5 이내					
	항공·기계설계학과		5 이내					
융합	기계공학과[야]		2 이내					
융합 기술 대학 충주)	전자공학과		15 이내					
^겠 구)	전기공학과		3 이내					
	전기공학과[야]		1 이내					
	컴퓨터공학전공		7 이내					
	컴퓨터소프트웨어학과		3 이내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	사회기반공학전공, 환경공학전공, 도시·교통공학전공	11 이내					
	건설환경도시교통공학부[야]	환경공학전공	1 이내					
	화공생물공학과		5 이내					
	반도체신소재공학과		5 이내					
공과	나노화학소재공학과		5 이내					
공과 대학 (충주)	산업경영공학과		5 이내					
(FT)	안전공학과		4 이내					
	건축공학과		4 이내					
	건축학과(5년제)		2 이내					
	산업디자인학과		1 이내					
	커뮤니케이션디자인학과		1 이내					
	영어영문학과		7 이내					
	중국어과		4 이내					
	한국어문학과		2 이내					
	행정학과		4 이내					
	행정정보융합학과		2 이내					
인문 사회 대학 (충주)	경영학과		3 이내					
사회	융합경영학과		2 이내					
네약 축주)	국제무역학과		2 이내					
017	사회복지학과		2 이내					
	음악학과		2 이내					
	스포츠의학과		1 이내					
	스포츠산업학과 항공서비스학과		1 이내					
			2 이내 2 이내					
	유아교육학과 간호학과		<u> </u>					
보건	식품생명학부	식품공학전공, 식품영양학전공, 생명공학전공	 7 이내					
보건 생명 대학 (증평)	물리치료학과	역품이익신하, 역품영향익신하, 생명하익신하	7 이대 3 이내					
대학	응급구조학과		3 이내 3 이내					
(유요)	유아특수교육학과		 1 이내					
	철도경영·물류학과		 3 이내					
	AI.데이터공학부	인공지능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5 이내					
철도	철도운전시스템공학과	20 10 20, 91 191 1 1 2 2 0	3 이내					
철도 대학 의왕)	철도차량시스템공학과		3 이내 3 이내					
의왕)	철도인프라공학과		3 이내					
	철도전기정보공학과		3 이내					
유정곳	리스키코워버(크고/코리)							
유전공 학부 계	자유전공학부(충주/증평)		1 이내					
계			38 이내					



2. 지원자격

가. 재외국민

- ▶ 초·중등과정 해당하는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학력을 소지한 자중에서 아래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자
 - ① 외국소재 고등학교 졸업자
 - ② 외국소재 고교에서 국내고교로 전학하여 국내고교를 졸업한 자

			į	최저 해	외 재학	·거주·	체류기긴	<u> </u>		
구분	지원자격		학생			해외근무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국외근무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공무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 개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년	3년	학생 재학 -	3년	학생 - 재학	
국외근무 상사직원의 자녀	외국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상사 직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 학교과정 1개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 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학생 재학	3년	3년		3년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 정부 또는 국제기구에서 3년 이상 근무 중이거나 근무하고 귀국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개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 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개막 - 기간 각각 의 1개년 마다	3년	3년	기간 각각 의 1개년 마다	3년	기간 각각 의 1개년 마다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 자녀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 요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 학교과정 1개학년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 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3년	3년	3/4 이상	3년	3년	2/3 이상	3년	2/3 이상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로서 외국의 학교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 1개학년 을 포함한 중·고교과정을 연속으로 3년(6학기) 이상 재학하고 귀국한 자 ※ 해외거주 시유: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파견 교직원 등	3년	3년		3년	3년		3년		

나. 전 교육과정 이수자

▶ 외국소재 초·중·고등학교 12년 이상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고등학교 졸업자 또는 이와 동등한 학력을 갖춘 자로서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최저 해외 재학·거주·체류기간								
지원자격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을 전부 이수한 재외국민·외국인·귀화허가를 받은 결혼이주민	12년	12년	12년	_	_	_	_	_	



다. 북한이탈주민

- ▶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
- ▶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법령에 의거 동등 이상 학력을 취득한 자

라.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 ▶ 본인 및 부모 모두가 외국인인 외국인으로서 우리나라 초·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과정(12년)을 전부 이수하고, 국내·외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 ▶ 한국어능력시험(TOPIK) 3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다만, 철도경영·물류학과, AI·데이터공학부는 한국어능력시험(TOPIK) 4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

3. 전형 방법

구	분	모집단위	전형요소 및 반영비율
재와국민과 외국인 입학정원	전 모집단위(일부 제외)	고등학교 성적 100%	
(재외국민)	2% 이내 모집	항공서비스학과	고등학교 성적 20% + 면접구술고사 80%
재와권화 와국인 (전교육장이수자 북한이탈주민) / 부보모두 외국인 외국인	입학정원 제한 없이 모집	전 모집단위(일부 제외)	서류전형 100%
		항공서비스학과	면접구술고사 100%
		음악학과	실기고사 100%

- ※ 입학정원 2% 이내 모집은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하여 성적순으로 선발하며, 고등학교 전 학년 성적을 100점 만점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원 불가
- ※ 음악학과 실기고사 방법은 수시/정시 신입생 모집방법과 동일
- ※ 지원자격 미달자, 서류 미비 및 미제출 또는 허위서류를 제출한 자, 실기고사 또는 면접구술고사 결시 및 괴릭자는 합격자 시정대상에서 제외